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8. 2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8.1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.8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8.29.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-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정일

가. 제안이유

동(同)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(2015.8.5-환경부)에 따라 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·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 -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서울시 정책결정에 따라 서울 관내에서

이사하는 경우 전입 전 종량제봉투를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○ 대형폐기물 환불 규정 일부 수정(안 제29조의 2)

- 대형폐기물 취소(환불 신청) 시 수거로 관리하는 장부 폐지 및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환불 요구사항 관리

○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(안 별표1)

- 대형폐기물 품목 중 금고는 철제 안에 콘크리트 등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 처리가 어려워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함(민간수거업체에서 처리)

【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】

(단위 : 원)

품목별	규격	부과금액	비고
금고	0.5m ² 당	10,000	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

○ 특수규격봉투 용량 추가에 관한 사항(안 별표4)

- ▶ 건설폐기물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을 기존 50ℓ 외에 20ℓ를 추가하여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편의 제공

【특수규격봉투 가격】

(단위 : 원)

구분	2016년까지	2017년부터
20ℓ	-	2,040
50ℓ	4,600	5,100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은모)

- 동(同) 조례안은 2015. 8. 5.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품목 및 규격별로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적용·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이에 우리 구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로 이사한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(前) 사용하던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시 발생되는 구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민 편의 위주의 청소행정을 실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동(同) 조례안은

1. 환경부 지침 및 구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 실현을 위해

- 1)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(前)에 사용하던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
- 2) 대형폐기물 취소(환불신청) 시 그 동안 병행해오던 수거 및 전산시스템 대형 폐기물 환불 처리방식 중 불필요한 수거방식을 폐지하고 “대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” 전산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청소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3) 대형폐기물 폐기 시 보안장치의 문제 소지가 있는 금고를 대형폐기물 종류에서 제외하고 민간수거 전문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였으며,
- 4) 그 동안 건설페기물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 종량제 특수규격봉투를 1 종류(50ℓ) => 2 종류(50ℓ, 20ℓ)로 추가하여 쓰레기 배출되는 양에 적당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.

2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

가. 띄어쓰기 용법에 맞게 정비함

- 1) **안 제2조** : 제1호 중 “쓰레기 · 연소재 · 오니 · 폐유 · 폐알칼리 · 둥울”로, 제3호 중 “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”으로, 제6호 중 “주변 환경”으로, 제7호 중 “별표 1에서”로, 제8호 중 “별표 2에서”로 하고,
- 2) **안 제3조** :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체 없이”로 하며,
- 3) **안 제11조** :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리 배출할 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및 주변 환경”으로 하고,
- 4) **안 제12조** : 제1항 중 “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함.

나. 붙여 쓰기 용법에 맞게 정비함

- 1) **안 제24조** : 제3항 중 “알아볼”로,

- 2) **안 제31조** : 제2항 중 “폐기물처리시설”로,
- 3) **안 제32조** : 제3항 중 “반입처리 시”로 하며,
- 4) **안 제34조** : 제1항 중 “제33조제1항 및 제3항”으로 함.

다. 법적 간결성 및 합축적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정비함

- 1) **안 제10조제2항** :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=>“제16조에 따른”로, 제6항 중 “제2항의 규정”=>“제2항”으로 하며,
- 2) **안 제29조의2제2항** : “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”=> “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”으로 하고,
- 3) **안 제30조** : “제9조제1항 규정”=>“제9조제1항”으로 하며,
- 4) **안 제32조제3항** : “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”=> “비용이 포함되며 수도권 매립지”로 함.

라. 동(同) 조례 조문 중 신설, 오자 탈락 및 수정되는 조항

- 1) **안 제2조** 제4호가목 중 “제5호까지의 규정”에서 “규정”을 삭제하고, 제6호 중 “감염성 폐기물”=> “의료폐기물”로, 제9호 중 “5톤”=> “5톤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”로 하고,
- 2) **안 제29조의2제1항** 본문 중 “제10조제2항제4호규정”에서 “규정”을 삭제하고, 제2항 중 “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”=> “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”으로 하고,
- 3) **안 제35조제1항**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에게는”=>“자에게는”으로 함.
- 4) **부칙 내용** :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중 특수규격봉투 20리터 가격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신설하는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2016. 7. 14. ~ 8. 3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,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구 전입자에게 종전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

우리 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, 대형폐기물 환불처리 방식을 대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전산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함은 물론 보안장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고는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, 특히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 특수 규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다양화(50ℓ, 20ℓ)하는 등 개정된 환경부 지침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배출방식을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, 부칙에서는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중 특수규격봉투 20리터 가격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조례를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은 조례 시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판단됨.

- 다만 폐기물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대형폐기물 환불 시 “수거 처리방식” 및 “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”을 병행하여 해오던 방식에서 “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” 전산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하고, 대형폐기물 중 금고를 대형폐기물 수거 종류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“내 고장 마포”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